

의안번호	제 258 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

발의자	안지윤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4월 10일

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안지윤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4월 10일
발 의 자 : 이상정, 김정일, 박봉
순, 안지윤, 안치영, 조
성태,
이윅희

1. 제안이유

- 도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규정(안 제1조)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정의(안 제2조)
-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·시행 근거 규정(안 제4조)
-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 규정(안 제5조)
-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위탁 근거 규정(안 제6조)
- 효율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)
-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 비밀준수의 의무 규정(안 제8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및 규정 : 붙임
- 나. 조례안예고 : 예고대상
- 다. 협의 : 양성평등가족정책관
- 라. 비용추계 : 붙임

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스토킹”이란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스토킹 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.
2. “피해자”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

제4조(시행계획) ①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
2. 스토킹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사항
3.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사업) ①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·운영
2.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·운영
3. 스토킹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·법률·주거 지원
4.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
5. 스토킹 실태조사 및 연구
6.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위탁) ① 도지사는 제5조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도지사는 효율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·지원 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법률·수사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8조(비밀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스토킹행위”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(反)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.

가.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

나. 주거, 직장, 학교,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(이하 “주거등”이라 한다)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

다. 우편·전화·팩스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·말·부호·음향·그림·영상·화상(이하 “물건등”이라 한다)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

라.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

마.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

2. “스토킹범죄”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.

3. “피해자”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.

4. “피해자등”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.

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스토킹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,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·회복 프로그램 운영
- 일상적인 상담과 구별하여 피해자별 개별화·전문화된 치유프로그램 적용

2. 비용 발생 요인

- 피해자에게 단계별 심리지원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
 - 초기 단계(사건 접수) : 심리평가 및 진단, 피해자 위기 상담
 - 본격 단계 : 인지 행동 치료, 가족 상담 등
 - 종료 단계 : 심리평가, 사례 모니터링 등

3. 관련조문

- 안 제3조(도지사의 책무)
- 안 제5조(사업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 : 2023년~2027년 (5년간)
- 예산 확보 상황 및 구체적 시행 가능한 사업에 한해 비용 추계 (2023년부터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)
- 향후 관련법 시행 및 사업 확대에 따라 변경 가능

나. 추계 결과 : 114,500천원

-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사업
 - 22,900천원 × 5년 = 114,500천원 * 2023년 예산 기준

다. 재원조달방안 : 국비 70%, 도비 15%, 시비 15%

